

IV. 結 論

-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지난 '80년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 달성이후, '90년대 들어서 순조롭게 安定成長期로 전환되는 듯하였으나, IMF 사태를 맞이하면서 FY'98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음.
- 특히 金融産業 전반에 걸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부실보험사의 시장퇴출이 이루어졌고, 현재 추가적인 퇴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. 또한 앞으로도 支給餘力比率의 달성도 여하에 따라서는 부실 보험회사의 退出이 불가피한 시장상황이 예상되어지고 있음.
- 향후 보험시장은 부실보험사의 整理 결과에 따라서 産業全體의 安定化와 직결되는 새로운 경영환경이 예상되므로, 부실사 퇴출시 계약자 보호 및 잔존 보험회사들에게 미치는 退出의 影響이 最小化되도록 퇴출제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.
 - 특히, 유럽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持株會社(holding company)를 통한 보험사의 인수·합병이나, 최근 일본에서 금융재보험 방식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재보험이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.
- 한편 퇴출방식 선정에 있어서 구조조정 소요비용이 가정 적게 들면서 합리적으로 회사를 賣却 또는 整理할 수 있는 방식이 선택되어야 함.
 - 따라서 외국과 같이 預金保險(保險保證基金)의 사용은 限定的으로 사용되어야 함. 예금보험의 과대한 사용을 통한 구조조정은 현존하는 보험사의 경영행태에 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으며,
 - 또한 산업내 잔존 보험회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

할 것임. 다시말해서, 보험산업내 다른 보험사들이 부실회사에 대해 연대책임 방식의 예금보험을 이용한 구조조정은 결국에는 계약자에게 부실의 책임을 분담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

- 외국과 같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산업의 부실을 처리해야 하며, 이 경우 당해부실사의 계약자에게도 「契約의 自己責任原則」에 입각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며, 궁극적으로는 부실의 일정책임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아래 재정지출에 의한 분담도 있어야 할 것임
- 은행 등 타금융권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보험산업도 부실사에 대한 사후책임의 rule과 그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임.

○ 여하간 향후 국내 보험산업의 成長 潛在力을 감안할 때, 국내 및 외국 자본의 新規流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.

- 따라서, 금번 구조조정을 계기로 보험산업의 신규진입과 퇴출의 명확한 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
- 퇴출시의 rule을 보험사업자 및 가입자가 事前에 주지하고 있음으로써,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실회사의 퇴출에 대해 국민의 컨센서스에 신속한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.

○ 부실 보험회사의 국내외매각에 있어서 最小의 자금지원으로 最大의 新規資金流入을 이룸으로써, 현재의 구조조정과정이 진정한 보험산업 발전의 계기로 자리매김되어야 될 것임.

○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構造調整을 통하여 退出의 Best Practice를 선례로 남김으로써, 향후 보험시장내 진입·퇴출의 유연성 정착과 자기책임경영의 문화가 早期에 定着되기를 기대하는 바임.